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ext{감액} = (\text{해당 감산 기준금액}) \times (\text{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text{입소자수}) \times \text{감산유형점수}$$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한다.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1점
0.3명 ~ 0.5명	1.6점
1명	2점

※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 인원수 - 근무인원수

4. 급여유형별·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감산 유형점수
주야간 보호	10명 미만	1.2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50명 이상	2점
단기보호		1.5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
노인 요양시설	30명 미만	1점
	30명 이상 50명미만	1.2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1.4점
	70명 이상	1.6점

-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 ③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 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